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Ibuk 5-do and Proposal for its Development

차지언

상명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경영학과

Ji-eon Cha(savina0811@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현행 국가정책으로서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의 정책적 지원현황을 토대로 전승지속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비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이북5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자의 고령화와 불완전한 전승체계의 극복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승 보호정책 및 재정지원의 당위성 셋째,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자원화를 위한 창의적인 발전방안 제시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뷰자료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화된 예능보유자의 예우와 동시에 전승능력이 인정되는 보유자의 복수지정제도 적용 둘째, 전승의 지속성을 위한 전승자들의 육성체계 확립 셋째, 교육프로그램과 학교교육현장의 확장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 인지 넷째,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응용체계에 이르는 영역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발전방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중심어 : | 무형문화재 | 이북5도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법 | 문화재청 | 황해도 화관무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protection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s the current national policy and analyze the foundational problems in order to suggest the future vision in a way of transmitting th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o the descendants, based on the policy support for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under the control of Commission for Ibuk 5-do (5 Northern Provinces of Korean peninsula). The research issue is first, the aging of the holders of the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in Ibuk 5-do and the overcoming of the incomplete transmission system. The second issue is the protective policy of the transmission from the national perspective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he third issue is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by using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Ibuk 5-do and the suggestion of the creative development for the resourcing of culture. As for the research methods, reference research and analysis on interview data and data from the related entities was done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actively adopted.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to be required; first, the aged holders of the cultural properties shall be treated well and at the same time, the holders recognized to hold the transmission ability shall be dually designated. Second, the training system for the younger generation to keep th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shall be established; Third, the educational program and school education shall be extended so that the importance of the transmission of the intangible traditional cultural properties in Ibuk 5-do (northern 5 provinces of Korea) shall be recognized; Fourth, the recording system shall be constructed and its application system shall be required. In the end, in order for such development methods to be implemented effectively, active government support is desperately required.

■ keyword : |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Ibuk 5-do (5 Northern Provinces of Korea) |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Hwangwanmu of Hwanghae-do |

I. 서론

일반적으로 문화(文化)는 한 사회의 구성원 간 집단체계에서 자연현상을 변화시켜 온 정신적·물질적 과정의 생산물로서 상호간의 상징체계 또는 집단의 생활양식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서로 약속된 상징체계를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하며 사회경험을 지속하고, 상징체계의 반영과 조직화된 제도와 질서, 규범과 생활양식 등의 범주 안에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주로 정신적·학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이를 기반으로 예술적 산물 또한 문화를 지칭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1]. 이처럼 문화의 개념은 '예술문화'의 의미에 포함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술을 문화의 필수요소로 인정하며, 문화부국이 곧 세계강국을 의미하듯 한 국가의 창의적인 예술에 기인한 문화우수성은 곧 예술 강국이 문화대국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2]. 예술은 기예와 학술을 통합하여 고도의 경지에 이른 기능이나 재주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식의 아름다움을 창출해 내는 인간의 표현활동과 작품을 의미한다. 이렇듯 문화적 산물로 가치가 높은 예술 작품들을 제도적으로 보존하고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정한 것을 문화재(文化財)라 총칭한다.

우리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중 후세에 보존하고 명맥을 유지해야 할 가치 있는 역사적 산물로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는 문학, 예술, 과학, 종교, 의식, 축제, 민속과 생활양식 전반에 이르는 민족적 문화 활동의 소산이다. 문화재는 그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하며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도 지정문화재로 분류 된다. 그 형태나 내용에 따라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로 구분되고 그 중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이 가변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시간성과 공간성에 영향을 받으며 사람을 통해 기능과 예술성이 전달된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과 구전에 의존하는 전승방법이 주인 무형문화재는 교육체계, 기록 방법, 보존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제도개선과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학계의 다각적 연구와 정부 및 종사

자, 학술연구자들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다변화와 대안마련의 시급성을 논의해왔고, 그만큼 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과 위기감이 절박했기 때문에 사료된다. 그러나 여전히 무형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고 명맥 유지에도 버거운 현실은 정책, 환경,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전승기피현상은 전승단절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국가는 법제도하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시대흐름에 맞춰 보완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현실반영의 실효성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 각 시도 별 지정문화재들은 지원방법과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국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꾸준한 지원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승지원금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기준으로 지원되는 시도가 대부분이다. 전승교육 현장에도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국가나 자치단체 별로 운영되는 무형문화재전수관을 활용하여 전수교육과 전승공연들은 재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호아래 전승종사자들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노력과 문화전달자라는 사명감, 예능보유자라는 명예를 안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물론 그들의 안정적 전승환경과 지속적인 전승체계를 도모하기엔 충분치 않은 지원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들은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못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포함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 수복된 시, 군을 말하며 이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부기관을 이북5도위원회라 한다. 이북5도위원회의 행정적 기능 중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그리고 역할과 기능은 북한 무형문화유산의 조사와 발굴로 이어졌으며, 이는 남한사회에서 북한지역의 민속예술을 전승하여 무형문화재로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북한지역의 향토문화는 실향민들에 의해 남한사회에 뿌리내린 북한지역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이 되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북한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전승의지를 보이며 1960년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1970년대 학술조사와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제도와 정책을 발판으로 멸실 위기의 북한지

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이를 토대로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 20종목을 지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앞서 살펴본 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은 성과들이 있어왔고, 특히 무용부문은 제도와 정책영역 뿐만 아니라 춤의 인식과 전승의 본질적인 차원을 넘어 동작분석을 포함한 장단과 소리분석이라는 학문적 팽창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창조적 계승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성과로 2016년 ‘인간문화재’용어의 법제화를 통해 예술개념의 전형성과 춤과 인간의 불가분적 융해성을 인정하는 변화를 주도하였다. 동시에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무형문화재 제도의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황희정(2017)은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40-50대 젊은 보유자들의 적극 발굴과 종목당 2명 이상의 인간문화재를 인정하여 독점권제와 경쟁을 유도하고 문화재청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함을 주장하였다[3]. 또한 무형문화재 제도와 운영에 대하여 김선영[4]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도의 운영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 전통춤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관리제도와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반대로 이명선(2017)은 ‘중요무형문화재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통춤 보유자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의 자본주의적 사회현상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계승화와 대중적 가치에 의한 문화권력 그리고 보유자에 의존하는 계승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정체성을 연구하여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5].

위의 연구들은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의 현황과 발전방안의 제시에 관한 연구들이었던 반면 양중승(2015)과 김승국(2017)은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현황과 현실적인 문제점의 제기를 통해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양중승(2015)은 문화재보호법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라는 연구에서 북한 무형문화재는 북한 토속문화의 소산물로서 실랑민 1세대들의 사상과 철학이 내재되어 있는 삶의 애환이 담긴 무형유산이며 나아가 남북문화를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동질성 회복의 기반이라고 언급하였다[6]. 나아가 북한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 구축 필요성과 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학술조사의 필요성과 역사성을 위한 기록 및 자료의 디지털화와 아카이

브, 세계화, 대중화를 위한 노력으로 요약된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 문화재위원을 역임하고 북한지역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한 연구전문가인 그는 북한지역 문화재의 올바른 전승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보존정책과 이북5도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시급성을 주장하였다.

김승국(2017)은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종목별 정기발표와 공연, 전승교육 그리고 실랑민들을 위한 각각의 행사 및 축제를 진행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현실성 없는 예산지원은 직무유기이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절대존재인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진정성을 의심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방법으로 행정안전부 예산지원보다는 법과 제도의 안정적인 지원과 통일대비의 전승기반을 위한 문화재청의 지원관리를 제시하였다[7]. 특히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소중한 자산인 이북5도 무형문화재가 확고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시점이었던 지난 2012년 북한의 ‘문화유산보호법’ 제정으로 통일대비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8].

국가무형문화재의 문화자원화라는 브랜드전략 차원에서 송정훈(2015)은 다양한 문화기술과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한 ‘문화자원화’로 무형문화재의 체계구축과 생활속 문화자원의 발굴 및 기록보존을 통한 지식의 자원화라는 기록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를 통한 다양한 전승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예능보유자들의 감동적인 인생이야기를 스토리텔링 기법의 콘텐츠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9]. 구체적으로 이지선(2011)은 중요무형문화재 타운과 테마파크를 결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산업화 차원에서 무형문화재의 미래가치를 연구하였다[10]. 이렇듯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으로의 확산은 향후 국가무형문화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국가차원의 새로운 문화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과 정책 그리고 고급문화로서의 예술경쟁력과 공연가치의 근본적인 이해와 접근은 전수교육의 교육적 연계와 전승체계의 새로운 정책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속

체계와 선행연구 분석들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행 국가정책으로서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전승현황을 살펴보고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의 보호제도와 재정적, 행정적 지원현황을 토대로 전승지속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비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문제제기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이후 전승과 보호제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전승주체자의 고령화와 불완전한 전승교육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둘째, 전승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으로 과연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접근은 타당성이 있는가?

셋째, 현재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자원화를 위한 창의적인 보존과 발전방안 제시는 가능한가?

첫 번째 현안으로 이북5도의 무형문화재는 주로 한국전쟁이후 남한에 자리 잡은 실향민 1세대가 전승주체자로 이미 고령화되어 원형유지와 보존·전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전승체계와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무형문화재 기록화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예능보유자와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매월 지원되는 전승지원금이 이북5도위원회 소속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 현실은 통일대국을 기원하는 국가지원체계의 사각지대로 고사위기에 놓여있다. 그나마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대부분은 전통예술과 의례, 의식, 놀이 등 단체종목 보존회의 명맥

유지를 위한 공연 진행에도 어려우며 전승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료개발 등은 자비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을 위한 전수시스템 설립과 관주도의 보호육성이 유일한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 다뤄질 내용의 중심은 현재의 적용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자원화를 위한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탐색하는 것이다.

이북5도의 무형문화재는 자국의 민족문화이며 남북통일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역사적 자료나 기록물들의 존재는 미비하며 북한지역의 문화유산이라는 특수성과 낮은 인지도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한지역 기반 무형문화재와 함께 문제인식의 공유를 통해 전승을 위한 다양한 자료구축과 국민관심을 주도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가 남북한 공동협의를 통한 운영위원회의 제안과 동시에 사안별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 자료의 분석과 문화재청, 이북5도위원회에 명시된 현황을 토대로 현행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추진방안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연구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정책의 흐름을 전개하고 문화재보호법의 실효적 가치를 파악한다. 둘째,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의 현황과 문제점 셋째,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현재 활동을 중심으로 전승체계를 살펴보고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과 도출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 콘텐츠 개발을 통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 그리고 해당 관청부서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문화재보호법과 국가 및 지역무형문화재 그리고 이북5도 무형문화재 관련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법령, 전승·보존을 위한 공연과 교육활동 등 선행연구의 범위를 탐색

하고, 언론기사와 인터뷰 등을 토대로 내용연계와 활용 그리고 전승을 위한 가치인식 탐색에 집중하였다.

III.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문화재 보호법

1. 무형문화재의 개념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신적 산물인 무형의 문화유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맥을 이어 왔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며 전승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은 민족의 정신과 삶의 양식이 바탕이 된 민족고유의 전통문화이며, 역사·문화·예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무형의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민족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법적보호제도가 탄생되었고 법적제도장치로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안으로 '문화재 지정'이라는 국가적 보호체계가 정립된 것이다.

무형문화재는 크게 예능과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능분야는 연극·무용·음악·놀이·무예와 의식, 기능 분야에는 공예기술과 음식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의 문화예술과 민족의 생활양식이 녹아져 있는 무형문화재를 통하여 조상들의 정서와 생활모습, 그 안에 내재된 민족적 얼을 공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자국의 민족문화유산이 귀하게 여겨야할 국가적 자산임을 인지하고 무형문화재 원형의 보존이라는 반석위에 시대적 흐름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창조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보호하며 운영해오고 있다[11].

2. 문화재 보호법의 생성과 변천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1950년 서로 상반되는 정치와 이념갈등으로 한국전쟁과 민족분단의 아픔을 겪는다. 이러한 침략과 전쟁을 겪는 동안 우리민족문화는 문화재의 파괴와 서구 선진문물의 무분별한 유입 등으로 문화쇠퇴기를 겪었으며, 이는 다시 자국민들로 하여금 민족문화 부활을 외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생적 전통문화의 부활을 꾀한 한국은 유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토대로 민족적 아픔을 극복하는 국민정서의 치유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민중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자민족문화의 부

활을 선도하였으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64년에 종묘제례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무형문화재를 향한 관심이 또한 높아졌다[12]. 문화재보호법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관한 행정절차 개혁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무형문화재법에 의거하여 무형문화재 관리정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란 표현으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원형유지에서 전형유지의 원칙으로 진일보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2018년 12월 개정된 무형문화재법의 2019년 6월 25일 시행시점에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의 탄생과 최근 일부 개정하기까지의 무형문화재제도와 정책의 변천사는 [표 1]의 내용과 같이 요약된다. 문화재 보호법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 이는 외국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는 문화재는 조약과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 이렇듯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를 후예들이 바르게 지켜내고 계승할 수 있도록 보호제도와 전승환경의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정부와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사명인 것이다.

3.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현황 및 문제점

민족의 역사적 산물인 무형문화재의 국가 정책적 보호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서 시작되었다. 1964년 국가문화재 지정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2018

표 1. 무형문화재 제도의 변천

시대별 구분	무형문화재 제도	정책의 주요 내용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의 시작 문화재보호법」 제정 (62.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지정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 정책의 시작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의무화 도입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제5차 개정 - 국가무형문화재의 발굴, 지정 - 보유자 인정의 의무화 (1970.8) - 보유자 복수인정 제도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속 조사 및 연구를 통한 무형유산의 발굴 촉진 북한지역의 무형유산 학술 연구 및 발굴, 지정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제7차 개정 - 지방문화재의 지정 - 전수교육 실시 - 전승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자 인정 및 해제 보유단체 인정제도 도입 보유자 기예능전수 교육 의무화(82.12.31)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 (영 제14399호) - 보유자 복수 인정 확대 (99.12) - 보유자의 사회적 지위상승과 자율권확대 (94.10) - 문화재관리국이 청으로 승격(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자의 전수교육 권한 강화/전수교육 자율화 보유자, 보유단체의 이수 증 교부가능 전승취약종목 특별 장려금 지급 보유자 기예능 공개 의무화폐지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제19차 개정(2001.3) 문화재보호법 제31차 개정(20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예보유자인정제도 도입 보유자 기예능 공개 의무화 재도입 보유자 인정해제 요건 구체화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제43차 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5.3) 무형문화재 관리 정책의 수립 - 조사 및 심의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관련 기록의 정보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자료의 조달 남북한 문화재 교류와 협력 등의 5개년 계획 수립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2014.10)

년 12월 31일 까지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142종목이며 시·도 무형문화재는 601종목이 지정되었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무형문화재 관리체계의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무형문화재의 범위 또한 기예능에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생활관습 등 7개 분야로 확대 되었다. 또한 신규종목의 발굴과 전승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자를 비롯한 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 충원을 도모하였다. 문화재청은 전승환경 개선과 전승의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 지원금 지급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확충, 공연과 전시기반 조성, 전승 자료구축 등의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문화재청의 시도와 실행노력으로 무형문화재의 인식제고와 전승환경 조성에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빠른 환경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욕구를 반영한 무형문화재의 역할에 관한 문제점은 여전히 제기되었다. 먼저 무형문화재 발굴과 지정, 인정절차에 관한 문제로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학습과 교류를 통해 전승이 이루어지는 무형문화재는 그 가치를 획일적인 수치로 계량화하거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종목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매년 논란의 여지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조사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술전문위원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체계적인 대책 또한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14]. 그밖에 행정추진과정의 문제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 시대성 반영, 원형보존과 전승교육체계의 문제로 전수교육관 활용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밖에 기록물의 부재와 관리문제, 선진화를 위한 전승자 인식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조사, 발굴, 지정 등 과정의 문제점보다 전승체계, 전승방법, 전승정책에 중점을 두었고,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문제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통합하여 이를 분석할 것이다.

IV. 이북5도 무형문화재 현황

1. 이북5도위원회 무형문화재 현황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뿌리는 북한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정신과 의미를 담아 남한에서 정착되었다. 북한 지역의 문화예술이 남한사회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남하하여 정착한 실향민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로 자신들의 문화와 예술을 재현하기 시작하면서이다. 실향민들이 전쟁의 아픔과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며 감내해야하는 고통의 공감대로 함께 모여 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공유했고, 이는 그들만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활동했던 예술인들은 삶의 애환을 담아 예술작품 활동과 민속예술을 공유하며 실향민들을 위로했고 그들의 동류의식은 남한 사회에 북한문화예술을 정착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배경에서 북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정책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주관으로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무형문화재 발굴을 위한 민속조사 및 연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북한지역의 향토색이 짙은 무형유산 중 학술적 가치가 높고 전승필요성이 인정된 가면극, 민요, 의례 등이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는 국가가 북한지역 전통문화 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형유산의 보존과 발전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민족 전통문화의 문화적 형식의 변질로 전승체계의 규칙이 무너져가는 민족문화의 소멸위기를 절감하고 뿌리를 되살려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발현된 것이다[15]. 이렇듯 국가과업으로 조사, 발굴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도 민속학자들에 의해 북한지역의 민속 및 문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었고 이를 통해 전승의 필요성이 인정된 종목은 이북5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북5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왔다.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는 1998년에 지정된 함경남도 ‘돈돌놀이’를 기점으로 2019년 2월까지 총 20개 종목이 지정되었고 그 중 한 종목이 보유자의 별세와 후계자의 부재로 지정 해제된 평안북도 청자·백자·결자 도공기술을 제외한 19개 종목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 (2000년 3월 지정된 이 종목은 실험당 1세대의 보유자의 현신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열악한 전승환경으로 후계구도를 유지 못한 채 보유자의 별세로 결국 2015년 지정 해제되었다.) 이렇듯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유산과 달리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으로 전승되어지는 방식이 전승의 유일한 방법으로 전승 후계구도의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분야의 명맥은 끊기고 문화유산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무형유산은 지역적 한계와 기록물의 부재, 전승자의 고령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분단 상황에 따라 발굴되지도 못한 채 소멸되거나 전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속도가 남한 무형유산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때문에 현재 열악한 전승환경 속에서도 악전고투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

호대책과 전승보존을 위한 지원정책은 현실직면의 과제로 남아있다[16].

통일한국이 화두가 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화합을 지향하는 시대에 남북 간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화합을 위한 유일한 매개체는 곧 전통문화와 예술일 것이다. 때문에 미래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인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처우개선과 전승환경의 문제점 개선, 다양한 방향의 발전 방안모색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인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의 원동력이며 자국문화 발전의 활력이 될 것이다.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 총괄현황과 범주별 내용은 [표 2],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2.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 총괄 현황

종 목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이수자			명예 보유자		
개 인	단 체	계	개 인	단 체	계	개 인	단 체	계	개 인	단 체	계	개 인	단 체	계
6	13	19	7	13	20	1	18	19	98	320	418	0	2	2

※ 이북5도위원회 제공

표 3. 이북5도위원회 무형문화재 지정 범주별 현황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 관습			의례·의식		
지	보유자	조 교	지	보유자	조 교	지	보유자	조 교	지	보유자	조 교
12	12	5	-	-	-	-	-	-	5	4	7

전통놀이 무예			전통시식			구전 전통 및 표현			계		
지	보유자	조 교	지	보유자	조 교	지	보유자	조 교	지	보유자	조 교
2	4	7	-	-	-	-	-	-	19	20	19

※ 이북5도위원회 제공

2.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북한지역의 무형문화재보호의 규정은 1962년에 제정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호에 의해 마련된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이다. 이는 1962년 한국 정부의 문화재 보호정책 일환으로 국가법령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기인한 것이다[17]. 국가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보존과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북한무형유산에 대한 보호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지역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역에 대한 지정권으로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동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 위

원장은 북한지역에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18]. 이북5도 등 문화재 보호규정은 1998년 5월에 제정되었으며 2018년 9월에 전부 개정되어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되어 현재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이북5도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소속 무형문화재종목들의 보호 및 관리와 북한지역 무형문화재의 발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정취지는 현 행정주체인 이북5도위원회의 실정에 맞는 문화재 규율을 확립하고 문화재법 체계에 부합하는 전승환경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북5도무형문화재는 지정과 보호를 받는 행정자치단체는 이북5도위원회이나 지역적 기반의 부재로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특성상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예산 또한 행정안전부의 관리체계 안에 운영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북5도 문화재의 보호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호주체의 큰 울타리는 분명 국가이며 문화재청일 것이다.

2017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략과제로 시대변화에 적합한 전승체계의 개편을 명명하여 무형문화재의 맞춤형 관리를 위한 특별성격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였고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체계적 관리의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명시하였다. 시대변화에 따른 전승자 역할의 재정립과 더불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종목의 활성화와 전승체계 구축의 효과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본다. 문화재청의 비전과 계획안에는 분명 시대변화와 전승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호정책이 명시 되어있으며 이는 국가나 행정단체에 의해 지정된 무형문화재 적용의 균형을 이뤄야 함이 연구자의 일관된 견해이고 주장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북5도위원회에 집행되는 예산안에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을 위한 예산은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종목 수에 비해 너무 작은 분배로 국한되고 전승의 장기적 계획인 전승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승교육을 위한 시스템의 부재와 후대에 원형을 올바

르게 전승하기 위한 기록화 작업체계의 전무현상은 전승 단절을 우려하는 전승자들의 전승의지와 사비로 충당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북5도무형문화재 보호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은 이북5도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하는 충분한 현실적인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표 5]는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북5도 문화재 보호진흥 관련 개정사항이다.

표 4.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법률」제36조

구분	조문	비고
제1항	문화재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
		지정 기준
제3항	제2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정 권한 부여
		포괄적 행정규칙 제정권한 위임 *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 제정권 부여

※ 이북5도위원회 제공

표 5. 2018.9. 전부 개정 이전

「이북5도등 문화재보호규정」과「이북5도 무형 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규정,관련 조항의 비교

구분	이북5도 등 문화재 보호규정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목적	제1조(목적) 이북5도 등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제1조(목적)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절차 등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지정 및 인정	제3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① 도지사의 조사 및 검토 요청 ② 조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③ 도지사가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요청	제15조(종목 지정) ① 지정 조건 ② 지정 대상 및 기준 ③~⑦ 지정절차: 조사위원 위촉 → 조사보고서 제출 → 예고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

	제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 ① 도지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정 ②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 ③ 도지사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공고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연장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안건 구분, 의결방법, 소위원회 설치 등
기타	·사업평가위원회: 5도 사무국장, 외부 위원(2명)	·사업평가위원회: 위원회 사무국장, 외부위원(5명 이내) ·전수교육 의무, 전수교육비 지급 근거

※ 이북5도위원회 제공

3.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화재청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미래 정책비전을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유산”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도권·대도시 중심에서 소도시의 활성화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지양하며, 점 단위 개별문화재 중심에서 점, 선, 면, 역사인문 공간의 보존과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에서 비지정문화재도 포함하는 포괄적 보호체제로, 원형유지를 위한 규제중심에서 가치보존·창출, 진흥·조장으로 확장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19]. 이를 역으로 추론하면 무형문화재 전승 상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고, 새로운 정책의 제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역,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향후 계층을 전승자 위주에서 국민전체로 확장하며 정부 및 민간 관계기관의 협업에서 지역문화 정책으로의 확대 노력으로 이는 무형문화재 전승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도시 활성화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지양함은 활성화된 종목들은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 색이 짙은 향토 문화재의 소외를 우려한 것으로 무형문화재 가치의 보존과 창출, 진흥과 조장으로 정책방향을 확장함은 결국 원형보존 중심에서 시대에 맞는 창조를 더하며 사고의 확

장으로 다양한 융합의 시도와 장르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제시한 정책을 바탕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현황의 문제점 인식과 추구해야할 가치방향의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북5도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승문제의 첫 번째는 전승의 구조적 문제로 전승구도와 체계상의 문제점을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운영상의 문제로 전승지원금과 교육토대를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등 구체적인 지원정책 측면의 문제점 두 가지 방향에서 제안하였다.

3.1 전승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1.1 예능보유자의 고령화

현재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는 예능보유자를 비롯한 전승자들은 대부분 실향민 1세대인 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북한문화를 학습한 실향민 2세대들이 주축이다. 1세대들은 평생을 북한지역의 문화예술훈을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바, 소실 위기의 북한지역 문화예술훈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전승의 구도를 갖추어왔다. 그러나 이북5도의 무형문화재는 행정자치구역이 현존하지 않기에 홍보의 한계와 관심의 부재, 활동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위축 등으로 인해 전수를 원하는 젊은 후계자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향민들만의 향유문화재로 한정되는 현실이다. 한국 전쟁이후 세기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 실향민의 문화예술훈을 주도하던 북한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다음세대를 준비를 위한 후계구도와 전승체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해당관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3.1.2 전승체계의 문제

전승이란 물려받고 계승해야 하는 의미로 이러한 체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전승자들에게 안정된 교육체계를 위한 전수교육관 설립과 함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전수자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전승구도를 확립해야 한다. 전승시스템의 확립에는 전수교육제도의 체계 확립과 더불어 전승자의 전승의지가 큰 역할을 차지한다. 물론 전승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유산 계승자라는 자긍심으로 전승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으나 문화유산의 맥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안한 미래는 곧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전승체계가 확립되어 지속적으로 수많은 전수자 이수자들을 배출하는 국가문화재나 시도문화재들은 이미 활성화 되어 전승문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고려사항이 아니겠지만 전승자의 부재나 소수 전승자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는 비활성화 종목의 보존단체들은 미래 전승자의 부재로 종목이 해제되어 전통문화의 단절을 두려워한다. 이렇듯 전승기반의 문제는 전수교육의 미흡과 전승자의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이는 곧 소중한 문화유산의 맥이 단절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지원과 더불어 관리단체와 전승주체의 유기적 교류 및 소통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전승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3.1.3 원형보존 전승의 문제

이북5도무형문화재들은 대부분 구전과 세습에 의해 전승된 것이며 기·예능에 있어 모든 세부사항은 예능보유자들이 원형정립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예능보유자 대부분은 실연자로서 형태적 기능전승이 주를 이루고 그들 또한 스승에게 주로 실연부분에 대하여 학습되어졌기에 학술적 기반정립은 취약한 편이다. 현재 대부분 종목의 예능보유자들은 고령화로 인해 교육과 실연능력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전승방법을 구축해야 할 시기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형보존을 위한 학술정립의 논리적 형태와 기능전수를 위한 과학적 전승방법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노력과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능전수 및 학술지원등의 사안별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과제이다.

3.1.4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원형보존을 위한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이며 전승체계에 앞서 원형보존은 시급한 과제이다. 원형보존과 전승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고령화된 예능보유자의 예우와 더불어 전승능력이 인정되는 보유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물론 고령화된 보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명예보유인정제도가 있으나 전승을 위해 인생을 바친 업적을 인정한다면 명예보유자

보다는 전승교육을 함께 이끌 보유자를 복수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물론 보유자의 전승교육을 보조하는 전수교육조교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으나 보조자의 역할인 전수교육조교가 아닌 전승주체인 예능보유자의 활발한 전승활동을 위한 전승능력을 갖춘 예능보유자의 복수지정은 보존단체의 힘을 실어주는 한 방법일 것이다.

둘째, 전승의 지속성을 위해 명확한 전승구도를 확립해야 하며 전승구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수자, 전수자들의 육성이 관건이다. 특히 젊은 전승지원자들의 확보는 종목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이들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미래가치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감은 전통문화유산의 미래가치와 함께 AI가 주도할 수 없는 감성지배구도의 전통문화유산이라는 긍지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가치가 확실한 전통문화예술에 젊은 세대의 공감각적인 참여와 관심은 문화예술 참여를 통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즉, 이북5도무형문화재는 경제지원과 더불어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 무형문화재의 산업화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유관기관의 행정지원이 절대적이다.

셋째, 젊은 전승자들의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조기교육과 학교교육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점차 소외되어가는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부활을 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조기교육과 공교육의 정착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북5도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접근방법이다. 이북5도무형문화재는 북한지역이 발생의 근원지로 지금은 역사적 자료를 구할 수 없으며 원형성은 오로지 예능보유자의 고증과 실연에 의존해야 한다. 현재 예능보유자들의 고령화로 이들에게 원형의 형태를 계승받지 못하면 점차 그 형태가 사라질 위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원형의 특성과 본질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청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체계와 동시에 움직임의 본질가치 그리고 동작분석과 응용체계에 이

르는 영역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보기록을 아카이브 형태로 보관하고 공유를 통해 이북5도위원회와 문화재청의 기록정보를 통합관리하며 연계활용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합리성이 담보된 체계적인 공유체계는 향후 통일시대를 위한 북한의 문화와 교육체계에도 맞물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3.2 전승 지원정책의 문제인식

3.2.1 전승지원금 정책

이북5도무형문화재가 보호를 받고 있는 이북5도위원회는 지역기반이 없는 행정자치단체로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예산 또한 행정안전부의 관리체계와 범위에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북5도무형문화재 종목들은 국가 또는 타 시도 무형문화재 종목들과 같이 매 해 공개적으로 전승공연을 해야 하고 이수자, 전수자들의 전승현황을 보고하고 전승환경이 인정되면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이 생겨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지난 2005-2007년 3천만 원, 2010-2012년 5천만 원으로, 13개 종목이 각각 나눠서 1년 치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2018년은 4,300만원을 그나마 2019년은 8,400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19개 종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각각의 보유단체에게 배분된다면 종목당 연간 지원 금액은 평균 440만원에 불과하다. 국가 무형문화재는 전승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보유자는 1,317천원, 전수교육조교는 66만원, 보유단체에게는 3,500천원이 매월 지급된다. 이와 비교하면 이북5도문화재들에게 지급되는 전승보조금은 지급 기준조차 모호한 터무니없는 지원금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북5도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매년 각 보존회 주최의 전승공연을 추진하여 전승노력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대안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도 국가기준에 준하는 합리적인 전승지원 방안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2.2 전수교육관 설립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전승교육체제의 확립이다. 체계적인 전승교육을 위해서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동시에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전수교육시설의 활용이다. 전수교육관은 전승자들의 기량연마와 학문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와 교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대중연계와 활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다. 이미 국가 무형문화재는 전수교육관이 전승교육과 공개행사 활용의 장으로 인식되었으며 각 시도 예도 무형문화재를 위한 전수회관이 건립되어 교육과 공연의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북5도무형문화재들은 전수회관은 고사하고 연습공간조차 없다. 이북5도무형문화재들은 주로 보유자 개인이 운영하는 전수공간에서 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향후 전승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된다. 매달 지불되어야 하는 보유자 개인의 전수소의 운영비는 정기적 전승지원금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이북5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보다 더 두려운 현실은 경제적 고충으로 전수소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승교육의 단절이 우려되는 것이다.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설립이 당연한 과제인 것이다.

3.2.3 행정정책의 지원

무형문화재의 모든 제도적 운영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탄력적인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시대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이 시급한 정책, 환경변화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향후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개선이 시급한 정책으로 전승단절의 현상, 경쟁과열 및 인정제도 관련 갈등, 무형유산교육의 활성화 등을 선정하였고 환경변화 대응책으로는 창의성 중심의 공교육 체계정립, 정부와의 소통강화, 지역의 문화정책 확대 등을 꼽았으며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맞춤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전승취약 및 소멸 위기 종목의 지원, 전승지원금 차별화와 간접지원의 확대를 명시하였다.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들은 국가무형문화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전승현황을 감수하면서 전승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에게 전승단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운영의 전문성, 전승취약 종목에서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와 보호방안을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북5도위원회의 책임성 및 보존단체의 맞춤형 관리를 위한 소통과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3.2.4 지원정책 문제와 개선방안

문화재청은 전승환경의 개선과 전승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수교육 지원금 확대와 전수교육관 확충정책을 발표하였다. 전승자들 입장에서 전승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이기에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고 지원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생계비가 아닌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라 설명한다. 매월 정기적인 전승지원금과 정기적 공개행사 비용을 지원받고 전수교육관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공연장도 무상지원 받는 국가 및 시·도 운영단체들도 전승지원금과 전승환경이 시대의 변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의 불합리함을 토로한다. 그런데 이북5도의 무형문화재들은 정기적인 전승지원금도 교육이 가능한 전수교육관은 고사하고 연습공간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들이 지원받고 있는 것은 전승지원금 명목으로 일 년에 한번 지급되는 보조금이 전부이다. 종목당 분할하면 연간 평균 오백만원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전승공연도 치러야 하고 전승교육도 지속해야 한다. 이북5도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전수공간을 운영하며 보존회와 예능보유자의 사비로 전수교육과 전승공연의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존속을 위해서는 전승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의 핵심은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합리적인 정책반영과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연구를 위해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흐름과 전개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과 연계된 전승과 보존활동 등의 구조적인 가치체계의 인식을 탐구

하고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특수성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과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민족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가치체계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의 책정을 위해서는 이북5도위원회의 예산확보와 문화재청의 보조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전수교육관 설립의 문제이다. 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와 전승교육의 체계안정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전승조건이다. 셋째, 행정 정책상의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문화재 관련 전공의 전문인력의 배치이다. 제도와 법률에 미숙한 무형문화재 전승종사자들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받고 전승취약 종목에서 벗어나 활성화 될 수 있는 의식의 전환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북5도무형문화재는 한국전쟁이후 정착한 실향민들의 역사이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착으로 발현된 문화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토속적 특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미래 통일한국의 이념적 동질감 회복에 민족문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귀중한 자료를 원형의 손실 없이 보존하는 것이 전승자들의 과업으로 이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은 전승자만이 아닌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북5도의 문화재들은 지정 시점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전승자들은 두고 온 내 고향에 대한 애착으로 모든 문제를 감내해왔다. 주지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안과 정책수립 노력이 전승주체와 행정주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결론삼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승체계 확립의 중요성으로 전승구도 확립에서 전승자들의 의욕고취를 위한 필수조건은 전승지원금의 지원과 전수교육관의 건립 그리고 법령에 의한 제도적 기반의 정착일 것이다.

둘째, 이북5도 문화재에 대한 전략적인 마케팅의 필요성으로 전승교육을 통한 창의적 작업은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역사적 배경과 전승계보 특수성의 스토리텔링 작업들은 무대예술의 새로운 장르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

고 있다.

셋째, 통일대비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은 이북5도무형문화재 발생과 전승계보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전환과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들에게 분단된 조국의 현실 인식과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전통의 문화와 예술은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대표적인 매개체로 이북5도무형문화재는 분명 통일대비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세계 속의 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9조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국가의 힘이고 미래의 귀한 자원이다. 국가차원의 보호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는 평등한 동기부여와 혜택으로 예술의 사회적 기여라는 명분에 필요충분조건으로 성립될 것이다.

2. 제언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향유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무형문화재의 브랜드화, 자원화 전략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활용방안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변화들이 담보된다면 전승자들의 인식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충분한 기반구축이 절대적일 것이다.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종사자들의 의식개선과 대중적인 소통 및 사회적 기여는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며, 공연활동과 연구범위 확장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역사성과 감동스토리를 분단의 역사와 함께 전쟁의 가족사 등을 그려낸다면 전통예술 기반의 대중적인 문화코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궁중에서 추어지던 춤이 해주 권번에 유입되며 민중과 함께 호흡하는 민속춤으로 자리

매김한 화관무(황해도무형문화재 제4호)의 전승이야기, 전 농민들이 항두계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호미를 들고 나와 김 메기를 하던 모습을 노래와 재담으로 표현한 항두계놀이(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의 해학적 표현 등 저마다의 색과 이야기를 지닌 전통문화유산이다.

둘째, 가상현실 기반의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 데이터, 가상현실의 기술집약적 융합예술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ICT기반의 콘텐츠 개발에 응용되면서 다양한 창작영역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와 함께 IT기술을 접목시킨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들은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연구, 기록과 활용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IT기술과 무형문화재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결과물이 될 것이다. 가상현실을 통한 예술 공연들은 360°VR 동영상기술의 활용으로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해 준다. 그러므로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가상현실 기반 콘텐츠의 제작은 또 다른 문화의 소통방식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기반 무형문화재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학교와 복지시설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면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대중화를 위한 모델이 될 것이며 나아가 공교육의 현실화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언을 종합하면 문화재청의 인식제고와 이북5도위원회의 실효적인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사회적 공감을 기반으로 교육적 토대와 문화적 확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예술적 활동의 상호노력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4876&cid=46634&categoryId=46634>, 2019.6.17.
- [2] 김창규, *문화재보호법 개론*,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pp.4-5, 2010.

[3] 황희정,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무형문화재 제도의 양립가능성 연구,” 무용역사기록학회지, 제46권, pp.37-53, 2017.

[4] 김선영,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도의 운영방안-무용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5, 2007.

[5] 이명선, *중요무형문화재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중요 무형문화재 구술사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7, 2017.

[6] 양종승, “문화재보호법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4집, pp.73-83, 2015.

[7]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idxno=24062>, 2019.6.20.

[8] 신현옥,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북한 교류협력방안,” 한국민요학, 제41집, 제2호, pp.151-153, 2014.

[9] 송정훈, *한국 무형문화재의 정책과정과 나아갈 방향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9-111, 2015.

[10] 이지선, *중요무형문화재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콘텐츠화 전략-중요무형문화재촌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2, 2011.

[11] 김미경, *무형문화재 정책 운영의 발전방안 연구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14, 2012.

[12] 김양혜, *한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2005.

[13] 김창규, *문화재 보호법 개론*,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p.23, 2010.

[14] 이정호, *무형문화재 관리의 개선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예능분야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0-42, 2003.

[15] 양종승, “문화재보호법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4집, p.76, 2015.

[16]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idxno=195963>, 2019.6.26.

[17] 양종승, “문화재보호법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4집, p.77, 2015.

[18] 김창규, *문화재보호법 개론*,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p.96, 2010.

[19] http://www.cha.go.kr/cop/bbs/selectVideoNewsBoardArticle.do?nttId=74609&bbsId=BBSMSTR_

1052, 2019.7.3.

저 자 소 개

차 지 연(Ji-eon Cha)

정희원



- 199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사)
- 2017년 8월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경영학과 박사(在)
-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4호 화관무 전

수교육조교

〈관심분야〉 : 한국무용, 무용교육